2024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 증명서류:기본내역 [고용보험료]

(조회기간 : 2024년 01 ~ 12월)

■ 가입자 인적사항

성 명	주민등록번호
김난영	040117-****

■ 고용보험료 고지내역

(단위:원)

월별	고지금액
01월	0
02월	0
03월	0
04월	0
05월	0
06월	0
07월	0
08월	0
09월	14,400
10월	3,600
11월	3,600
12월	3,600
합계	25,200

- 1. 고지금액: 근로복지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,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실제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급액입니다. (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.)
- 2. 시점에 따라 월별 고지금액이 마이너스(-)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.
- 3. 건설업, 벌목업 사업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의료비]

(조회기간 : 2024년 01 ~ 12월)

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김난영	040117-*****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지출금액 계
9-96-00*	人 ****	일반	14,100
5-18-66*	삼****	일반	882,600
9-16-68*	온****	일반	6,200
6-26-00*	0 ****	일반	28,100
3-32-92*	세****	일반	3,100
의료비 인별합계금액			934,100
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			0
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			0
인별합계금액			934,100

- 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 - ※ 미용 목적 성형(교정)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(보약) 구입비용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'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,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
- 2. 공제 한도 :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 자·6세 이하자·건강보험 산정특례자·난임시술비(한도 없음) 그 외부양가족(700만원)
 - ※ 시력보정용 안경(콘택트렌즈)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,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교육비]

(조회기간: 2024년 01~12월)

■ 학생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김난영	040117-****

■ 교육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교육비구분	학교명	사업자번호	구분	지출금액계
대학교	***대학교	**9-82-00***	일반교육비	1,108,000
일반교육비 합계금액			1,108,000	
현장학습비 합계금액				0

- 1. 아이행복(사랑)카드: 아이행복(사랑)카드를 이용하여 지급한 보육료 중 부모부담금액(정부지원금 제외)이며, 추가로 지급한 보육료가 있는 경우 해당 보육시설에서 '교육비납입증명서'를 발급받아 공제 가능합니다.
- 2. 대학(원)교육비 : 등록금 등 교육비에서 학자금대출과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제공합니다.
- ※ 2017년 귀속부터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(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에 한함)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, 대출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는 연도에 원금과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- 3. 공제 한도: 근로자 본인·장애인특수교육비(전액), 취학전 아동·초·중·고등학생(연 300만원), 대학생(연 900만원), 교복구입비용(중·고등학생 1명당 연50만원), 현장학습비(초·중·고등학생 1명당 연 30만원)

-3-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사용처별)내역 [신용카드]

(조회기간 : 2024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김난영	040117-*****

■ 전년도,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

(단위:원)

2023년 사용금액 합계	2024년 사용금액 합계
4,189,354	6,245,124

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(단위:원)

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등	합계금액
5,608,124	6,000	618,100	12,900	6,245,124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(단위:원)

구분	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공제대상금액합계
신용카드	101-86-61717	(주) KB국민카드	일반	5,608,124
신용카드	101-86-61717	(주) KB국민카드	전통시장	6,000
신용카드	101-86-61717	(주) KB국민카드	대중교통	618,100
신용카드	101-86-61717	(주) KB국민카드	도서공연등	12,900
인별합	계금액			6,245,124

- 1. 공제대상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2. 사용처 구분 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 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일련번호 : 20250130-18891070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-4-

2024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사용처별)내역 [직불카드 등]

(조회기간 : 2024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김난영	040117-*****

■ 전년도,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

(단위:원)

2023년 사용금액 합계	2024년 사용금액 합계
2,228,615	2,809,065

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(단위:원)

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등	합계금액
2,738,195	0	0	70,870	2,809,065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(단위:원)

구분	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공제대상금액합계
직불카드 등 107-88-36127		비즈플레이 주식회사	일반	30,600
직불카드 등	202-81-48079	신한카드 주식회사	일반	2,707,095
직불카드 등 202-81-48079		신한카드 주식회사	도서공연등	70,870
직불카드 등	202-81-02637	(주)신한은행	일반	500
인별합계금액				2,809,065

- 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2. 사용처 구분 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
-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일련번호: 20250130-18891070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-5-

2024년 귀속 소득ㆍ세액공제증명서류: [현금영수증]

(조회기간 : 2024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김난영	040117-*****	

■ 전년도,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

(단위:원)

2023년 사용금액 합계	2024년 사용금액 합계		
6,400	189,700		

■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

(단위:원)

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 등	주택임차료 거래	합계금액
3,700	0	186,000	0	0	189,700

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,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(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
-6-

- ※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(홈택스> 상담·불복·제보>현금영수증·신용카드 미발급/발급거부>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) 또는 세무서(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)에 신청
- 2. 국세청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는 주택임차료(월세) 거래분은 일반거래금액으로 계산함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귀속 소득ㆍ세액공제증명서류: [현금영수증]

(조회기간 : 2024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김난영	040117-*****	

■ 현금영수증 사용내역

(단위:원)

		월별 공제대상금액				
78	조 근	01월	02월	03월	04월	고레디사그애
구분	종류	05월	06월	07월	08월	공제대상금액
		09월	10월	11월	12월	
		0	0	0	0	
현금영수증 일반거래	일반거래	0	0	0	0	3,700
	0	0	0	3,700		
현금영수증 대중교통거래		0	0	62,000	62,000	
	62,000	0	0	0	186,000	
		0	0	0	0	

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,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(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
-7-

- ※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(홈택스> 상담·불복·제보>현금영수증·신용카드 미발급/발급거부>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) 또는 세무서(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)에 신청
- 2. 국세청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는 주택임차료(월세) 거래분은 일반거래금액으로 계산함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